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 함정요원 (순경) -

해 사 법 규

해설 : 김성곤 교수

1. 도선사가 승선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해양경찰관이 「해사안전법」에 따라 운항자 등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음주측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도선사	㉡ 당직 이등항해사	㉢ 기관장
㉣ 선장	㉤ 조리장	㉥ 당직타수

- ① 5명 ② 4명 ③ 3명 ④ 2명

1. 정답 ②

- ▶ 음주측정 대상자 4개 : ㉠도선사 ㉡당직 이등항해사 ㉣선장 ㉤조리장 ㉥당직타수
- ▶ 음주측정 대상자가 아닌 사람 : 1개 : ㉢기관장
▶기관장은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 됨

■ 「해사안전법」 <법 제41조 1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중 「선박법」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2. 정답 ③

보기③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이다.

■ 국기의 게양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3. 다음 내용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②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③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④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3. 정답 ③

보기③은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4. 다음의 甲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급 공무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여야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이 되는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甲은 과거에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였으며, 2019년 4월 13일 처음으로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해양수산행정 분야에 임용되었다.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4. 정답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4호에 의거 과거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1년만 더 근무하면 된다.

5.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야간운항장비가 아닌 것은?

- ㉠ 라디오
 ㉡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야간 조난신호장비 ㉣ 통신기기
 ㉤ 전등
 ㉥ 항해등
 ㉦ 초단파대 무선 설비
 ㉧ 나침반
 ㉨ 레이더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정답 ②

- ▶ 야간 운항장비 6개 : ㉡ ㉢ ㉣ ㉤ ㉥ ㉦
 ▶ 야간 운항장비가 아닌 것 3개 :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 운항장비)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6.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은?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① 140 ② 150 ③ 160 ④ 170

6. 정답 ④

$$120 + 20 + 30 = 170$$

7.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속여객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항시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화물운반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인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7. 정답 ①

보기②, ③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서장이 명할 수 있다.
보기④ 안내선 사용은 명할 수 있으나 예인선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해사안전법」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법 제10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법 제11조>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이다.
-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8. 정답 ②

▶ 옳은 것 2개 : ㉠ ㉣

▶ 틀린 것 2개 : ㉡ ㉢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다.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외교부장관	㉡ 울산광역시장	㉢ 충청북도지사
㉣ 해양경찰청장	㉤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 ① 5명 ② 4명 ③ 3명 ④ 2명

9. 정답 ③

▶ 통보하여야 하는 사람 - 3명 : ㉡ ㉣ ㉤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시행규칙 제2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10.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신고 의무와 관련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 사고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甲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다.
- ② 선저폐수 이송 작업 중 실수로 이를 해양에 배출한 기관사 乙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배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 ③ 인천 덕적도 앞 바다에서 조업 중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닻자망 어선의 선장 丙은 관련 사실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④ 기름 저장시설 관리자 丁은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바다로 배출된 것을 발견하고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10. 정답 ③

보기③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법 제6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11. 다음은 해양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숫자들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사망 등으로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 - 6, ㉡ - 6, ㉢ - 7 ② ㉠ - 6, ㉡ - 1, ㉢ - 30
 ③ ㉠ - 3, ㉡ - 6, ㉢ - 7 ④ ㉠ - 3, ㉡ - 1, ㉢ - 30

11. 정답 ②

-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지위 승계 ➡ 6개월 이내 신고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승계 ➡ 1개월 이내 신고
-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승계 ➡ 30일 이내 신고

12.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제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 위험물운반선 ㉡ 잠수선 ㉢ 여객선 ㉣ 예인선
 ㉤ 고속선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① ㉡, ㉢, ㉤ ② ㉡, ㉢, ㉣ ③ ㉠, ㉤ ④ ㉠, ㉣

12. 정답 ④

- ㉠ 위험물운반선 ㉣ 예인선은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선박 : ㉡ ㉢ ㉤ ㉥
 ▶ 아닌 선박 : ㉠ ㉣
 ㉠ 위험물운반선 ㉣ 예인선

▶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구 분	종 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 선박길이 24m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24m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 2) 준설도 운전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3) 선박길이 12m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

13.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① ㉠ - 소방서장 | ㉡ - 해양경찰서장 |
| ② ㉠ - 소방서장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 ③ ㉠ - 시장·군수·구청장 | ㉡ - 해양경찰서장 |
| ④ ㉠ - 시장·군수·구청장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13. 정답 ③

■ 사고발생의 보고 <법 제37조 1항>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에 따라 설립된 (㉡)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㉔)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㉓	㉔	㉕
①	선박안전법	해운조합	관리이사
②	해운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조정자
③	해운법	해운조합	사업자
④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운항관리자

14. 정답 ④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 제2항>

15. 「도선법」상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 선박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의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은?

㉓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개이다.
㉔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① 1,012 ② 1,013 ③ 812 ④ 813

15. 정답 ①

$$12 + 500 + 500 = 1,012$$

- 강제도선구 : 1. 인천항 2. 대산항 3. 군산항 4. 목포항 5. 여수항 6. 마산항 7. 부산항 8. 울산항 9. 포항항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당진항 12. 제주항
- 강제 도선 선박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16.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이 행하되, 미리 ()의 심의를 거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㉓	㉔	㉕
①	국방부장관	국무회의	대통령
②	외교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장관회의	대통령
④	해양경찰청장	국무회의	국무총리

16. 정답 ①

▶ 「영해 및 접속수역법」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법 제5조 3항>

▶ **시행령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이 아닌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 ②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③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④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

17. 정답 ④

보기④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권리 <법 제3조>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 가. 인공성·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나. 해양과학 조사
 -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18.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을 거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6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3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③	6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④	3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18. 정답 ①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상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강화도	㉡ 대청도	㉢ 마라도
㉣ 백령도	㉤ 완도	㉥ 울릉도
㉦ 연평도	㉧ 진도	㉨ 추자도
		㉩ 한산도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9. 정답 ①

■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 ① 선박의 출항·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포구에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을 둔다. <제9조제1항>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포구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포구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항·포구
- ② 신고기관은 출항·입항 통제소, 출항·입항 신고소 및 출항·입항 대행신고소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한다. <제9조 2항>
-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제14조>

20. 다음 중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 ㉠ 무동력어선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 낚시어선
-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0. 정답 ②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

1.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어선 <시행규칙 제42조의2>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먼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 ▶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서해특정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 ▶ 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